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회용 컵의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1회용 컵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자인 보증금 대상사업자는 1회용 컵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처리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 2020. 6. 9. 공포, 2022. 6. 10. 시행)됨에 따라,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임차료, 인건비 등 1회용 컵의 보관 및 운반에 드는 비용, 표준용기 외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선별, 관리 및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처리지원금을 고시하도록 하며,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25. ~ 3.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의 제목 “(취급수수료의 산정)”을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으로 한다.

제12조의3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5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차료, 인건비 등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1회용 컵(이하 “1회용 컵”이라 한다)의 보관에 드는 비용
2. 차량·유류비, 인건비 등 1회용 컵의 운반에 드는 비용
3. 표준용기 외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선별, 관리 및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처리지원금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처리지원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이하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및 수집·운반사업자 등의 의견을 듣고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리지원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의4 중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기·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회수·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도매업자, 소매업자, 1회용 컵 수집·운반·재활용업자”로 한다.

제12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미반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빈용기의 미반환보증금: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빈용기의 규격별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해당 연도에 출고된 규격별 용기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규격별 빈용기 개수) × 규격별 자원순환보증금액

2. 1회용 컵의 미반환보증금: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

(해당 연도에 판매된 1회용 컵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1회용 컵 개수) ×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

제12조의6제1항 중 “소매업자들”을 “소매업자 등을”로 한다.

제12조의8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회용킵보증금대상사업자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
활용 표시 라벨의 제작·공급

제26조제5호의2 중 “반환 및 취급수수료”를 “반환,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3 중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를 “보증금대상사업자”로, “재사용 표시”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를 “보증금대상사업자”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자원순환보증금액(제12조의2 관련)

1. 빈용기의 자원순환보증금액

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고되거나 수입된 빈용기에 적용되는 기준

대상 품목	규격	자원순환보증금액
영 제17조제2항 각 호의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빈용기에 적용되는 기준

대상 품목	규격	자원순환보증금액
영 제17조제2항 각 호의 제품	190ml 미만	70원/개
	190ml 이상 400ml 미만	100원/개
	400ml 이상 1,000ml 미만	130원/개
	1,000ml 이상	350원/개

2.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

대상 품목	자원순환보증금액
영 제17조제4 항의 제품	300원/개

[별표 5]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4 관련)

1. 빈용기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가.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 1) 지역별로 빈용기를 회수하기 위한 별도의 수집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 2) 빈용기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제2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 체계를 통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해야 한다.
- 3) 회수된 빈용기를 특별한 이유 없이 파손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 4) 표준용기는 제12조에 따라 등록하여 사용해야 하며, 표준용기가 아닌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빈용기의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세부적인 생산, 회수, 재사용에 관한 계획을 제품 출시 후 3개월 내에 수립하여 회수·재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5) 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표준용기 외의 용기를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 및 반환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6) 환경부장관이 4)에 따라 수립한 생산, 회수, 재사용에 관한 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 7) 소비자의 빈용기 반환 및 자원순환보증금 환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홍보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 8)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와 소비자로부터 빈용기가 파손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회수용기의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9)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출고, 회수, 파손 및 신병 투입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나. 빈용기 취급 도매업자

- 1) 도매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공급한 소매점에서 보관 중인 빈용기를 회수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매점과 협의하여 회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2) 회수된 빈용기에 대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부터 지급받은 자원순환

보증금 및 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 전액을 소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매점 등과 합의하여 취급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 3) 소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판매된 제품의 빈용기는 도매업자가 직접 회수해야 한다.
- 4) 회수된 빈용기를 제품의 제조·수입 회사별(표준용기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용량별, 회수경로별(도매업자가 직접 회수하는 경우와 도매업자가 소매업자를 거쳐 회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품별(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별을 말한다)로 각각 분류하여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5) 회수용기 보급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소매업자에게 이를 홍보하고 안내해야 한다.
- 6)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판매 및 회수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다.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

- 1)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가)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 나) 빈용기가 훼손·파손 또는 오염되어 재사용이 어렵거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2) 소비자가 쉽게 빈용기를 반환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반환장소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 3)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빈용기 반환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 4) 회수된 빈용기의 훼손을 방지해야 하며, 해당 빈용기를 제조·수입 회사별, 용량별, 제품별로 분류하여 도매업자 및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하는 도매업자와 협의하여 분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 5)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제품의 가격과 자원순환보증금액

을 소비자용 영수증에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6) 반환되는 비용기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확인하여 지급해야 한다.

7)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제품의 판매 및 회수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2. 1회용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가.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

1)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제품의 가격과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소비자용 영수증에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2)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과 처리지원금을 제3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해야 한다.

3) 1회용 컵을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자원순환보증금 표시가 없거나 바코드 등이 훼손되어 자원순환보증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나) 이미 자원순환보증금을 지급받은 1회용 컵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

다) 1회용 컵의 본체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표시 라벨만 반환하는 경우

라) 같은 사람이 1일 20개를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마) 내용물이 남아있거나 부속물[뚜껑, 빨대, 컵 홀더(cup holder) 등]을 포함하여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바) 해당 매장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동일한 영업표지(브랜드)의 1회용 컵을 반환받는 매장에서 해당 영업표지가 아닌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4)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컵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5)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컵이 적절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3호가목에 따라 지정된 수집·운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6) 자원순환보증금 및 처리지원금의 지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판매·반

환수량, 수집·운반사업자에게 인계한 수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나. 반환된 1회용 컵을 회수하는 수집·운반사업자

- 1) 수집·운반사업자는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로부터 회수한 1회용 컵을 재질별로 구분하여 제3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 2)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회수 주기, 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다만, 수집·운반사업자는 1회용 컵의 수거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수거 중단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해당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다. 1회용 컵을 재활용하는 사업자

- 1) 수집·운반사업자로부터 인계받은 1회용 컵을 표준용기와 표준용기가 아닌 1회용 컵으로 구분하여 재질별로 선별해야 하며, 재활용 방법이 다른 재활용품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 2) 재활용사업자는 1회용 컵을 재활용할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3.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준수사항

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의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정보관리 및 자금이체 등이 가능한 지급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나. 부당한 방법으로 자원순환보증금,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정산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다. 1회용 컵을 적절하게 수집·운반하고, 재질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를 수집·운반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

제출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년도 미반환 보증금 사용실적	① 미반환보증금(백만원)	② 사용용도	지출액(백만원)

()년도 미반환 보증금 사용계획	① 미반환보증금 예상액(백만원)	② 예상 사용용도	지출 예상액(백만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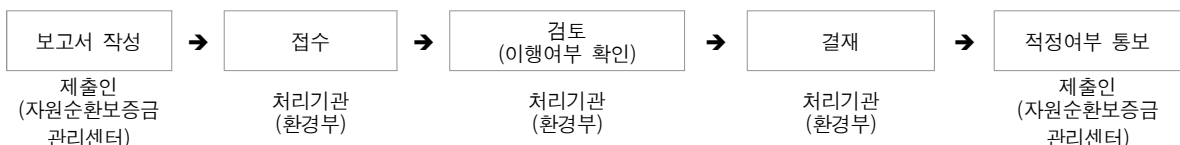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비용의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용기등의 회수를 향상을 위한 홍보 나. 용기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다.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라.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마. 용기등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바.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사.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3. 전년도에 미반환보증금을 제2호 각 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서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 ① 미반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빈용기의 미반환보증금: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빈용기의 규격별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해당 연도에 출고된 규격별 용기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규격별 빈용기 개수) × 규격별 자원순환보증금액
 2. 1회용 컵의 미반환보증금: 해당 연도에 판매된 1회용 컵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1회용 컵 개수) ×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
- ② 미반환보증금의 사용용도는 첨부서류란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제출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③ 출고 예상량 (개)	④ 재활용 의무량	⑤ 비고	
	① 제품명	규격(ml)	자원순환보증금 (원/개)				② 취급수수료 (원/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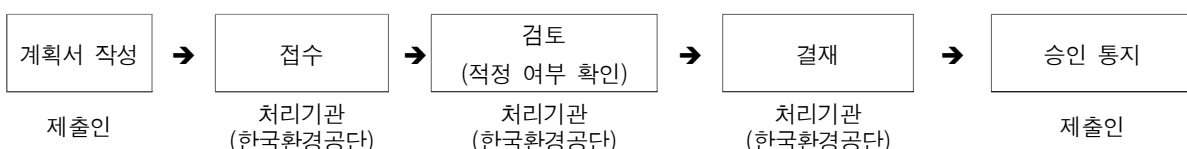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재사용 계획 2. 자원순환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 계획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 ①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구체적인 제품명을 적습니다.
- ②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적습니다.
- ③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해당 연도의 출고 예상량을 적습니다.
- ④ 해당 연도 출고 예상량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부과된 재활용의무율을 곱한 수량을 적습니다.
-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표준용기 해당 여부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3(취급수수료의 산정) ① ~ ⑥ (생 략) <신 설>	제12조의3(취급수수료 및 처리지 원금의 산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 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란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5조 의5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 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 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차료, 인건비 등 자원순환 보증금이 포함된 1회용 컵(이 하 “1회용 컵”이라 한다)의 보 관에 드는 비용 2. 차량·유류비, 인건비 등 1회 용 컵의 운반에 드는 비용 3. 표준용기 외의 용기를 사용 하는 경우 이를 선별, 관리 및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처리지원금을 정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에 처리지원금의 산정
<신 설>	

<신 설>

제12조의4(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의5(미반환보증금의 산출·사용계획 등) ①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미반

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이하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및 수집·운반사업자 등의 의견을 듣고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리지원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의4(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
-----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기·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회수·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도매업자, 소매업자, 1회용 컵 수집·운반·재활용업자 ---.

제12조의5(미반환보증금의 산출·사용계획 등) ①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미반

환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빈용기의 규격별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연도에 출고된 규격별 용기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규격별 빈용기 개수) × 규격별 자원순환보증금액

② ~ ③ (생략)

제12조의6(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① 법 제15조의4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원순

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빈용기의 미반환보증금: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빈용기의 규격별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해당 연도에 출고된 규격별 용기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규격별 빈용기 개수) × 규격별 자원순환보증금액

2. 1회용 컵의 미반환보증금: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

(해당 연도에 판매된 1회용 컵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1회용 컵 개수) ×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6(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① ---

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소매업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의8(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운영) ① (생략)

② 법 제15조의6제3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③ (생략)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5의2.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및

----- 소매업자 등을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8(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 라벨의 제작·공급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
----- 반환, 취

<u>취급수수료</u>의 지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의3.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u>비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u>의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u>재사용 표시</u>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u>비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u>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 14. (생략)	<u>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u>--- ----- ----- 5의3. ----- -- <u>보증금대상사업자</u>----- ----- -- <u>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u> ----- -- 6. ----- <u>보증금대상사업자</u> ----- ----- ----- -- 7. ~ 14. (현행과 같음)
---	--